

Q&A

편집자의 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방대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국민 개개인이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개별적인 법령을 주제에 따라 재정리·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의 종합법률 콘텐츠이다. 이번 신년호인 1월호에는 『아동·청소년/교육』편의 가수(아이돌)에 이어 근로청소년, 불량식품, 실종아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어린이 생활건강에 관하여 게재한다.

근로청소년 편

1.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를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를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併科)될 수 있습니다.

5.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량식품 편

1. 불량식품이 정확히 어떤 식품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의 개념

☞ 불량식품이란 ‘부정·불량식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위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등을 불량식품이라 하고,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 등을 속이거나 다른 성분 등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나 신고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하는 식품 등을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용어집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을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 불량식품

☞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용 식품, ⑥ 허위표시·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습니다.

2.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

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99번이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포상금의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이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즐겨먹던 식품이 불량식품에 해당하여 강제 회수처분 됐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불량식품 회수제도란 무엇인가요?

불량식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식품회수제도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 영업자 등의 자진회수와 강제회수(회수명령)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일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위해식품 등의 공표를 한 후 회수결과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

고해야 합니다.

☞ 한편, 영업자가 일정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강제회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량식품을 사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는 후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식중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식중독에 관한 원인조사 및 보고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시장(「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역시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후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데, 원인조사는 유증상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가검물 채취·검사, 식중독 원인시설로 의심되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현장 환경조사, 보존식 등 수거·검사, 식재료공급업소 추적조사 등을 통한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파악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6.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서 벌레같은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이물이란?

☞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 이물을 발견한 경우 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 일시를 확인합니다. ②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③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며,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④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합니다.

◇ 거짓 이물발견 신고에 대한 처벌

☞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 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해결

☞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품구매 전에는 원산지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농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인증마크의 확인

☞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 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

9. 아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즐겨먹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고를 때에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인증하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표시와 각종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신호등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피자, 피자,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식품에는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식품 소비자는 품질을 인증받은 식품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는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색깔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영양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면 쉽게 좋은 영양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님께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구매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 구매 전 확인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기능성에 관한 정보,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원료의 함량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위의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아동 편

1.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유치원 등하교길이 항상 불안합니다. 아이의 유괴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범위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2.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공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

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 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5.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의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

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대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편

1.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약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형사소

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3.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

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편

1.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던 저희 반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해서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치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네.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

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5. 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중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해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생활건강 편

1.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A형간염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Flu(인플루엔자)
-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2.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3.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모든 의약품이 안전포장이 되어 있나요?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의약품에는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합니다.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날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소아용 의약품 중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מיד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4.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5.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
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
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
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
여 정함)
-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
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도축업 시설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